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연명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수요 발굴 및 내부 T/F를 구성, 운영’했다고 하며, 이후 전문가 간담회(‘20.9~), 학계 및 법조계로 이루어진 연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쳤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은 단 한차례도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라고 해서 중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탓에,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중요한 의제들,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질화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2차 개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2차 개정에서 배제된 의제들은 단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의제일 뿐이 아니라 이미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의제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의제들이 2차 개정에서 배제될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은 한참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제출하는 이번 의견서는 비단 입법예고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2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1.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 제안

### 1)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

#### 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1호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에서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에게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 외에 법령에 근거하거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적법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GDPR의 경우에는 처리의 적법근거가 동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3조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들, 제14조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 동의 외에 다른 적법 근거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관련하여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고지하고, 권리의 행사 방법,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정보주체에게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고지할 때에는 명확하게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음. GDPR 제12조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리와 관련된 통지를 할 때 “정확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개인정보주체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동의를 받을 때로 제한됨. 동의 외에 다른 적법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련한 정보 및 자신의 권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유무, 이와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중대성 및 결과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나.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0조에 제1항에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GDPR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주체가 이미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기 힘든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받은 제3자가 정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의가 아니라 다른 적법 근거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처리자가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해 알리는 내용도 매우 제한적임. 수집 출처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직접 수집할 때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다.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4조 3호는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제35조는 개인정보의 열람권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있음. 따라서 제35조 제1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처리 여부, 방법, 시기, 대상 등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열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라. 정보주체의 정정, 삭제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6조에서 정정·삭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가 열람권을 행사한 이후에만 정정·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굳이 열람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마.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보완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는 내용 중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적법 근거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수립 및 이행, 법령에 따른 의무 등 다양한 적법 근거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어떠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적법근거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2) 민감정보의 처리 관련 규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인 처리 제한, 예외적인 허용을 특성으로 하는 민감정보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설사 과학적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GDPR의 경우에도 제9조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 (j) 항에서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역사적 연구 목적, 통계적 목적으로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고, 개인정보보호권의 본질을 존중하며, 개인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경우,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입법예고안에서 신설되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에서도 민감정보에 기반한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반면, GDPR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 혹은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에 대한 자동화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유전정보 등 4가지의 민감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시행령에 규정된 민감정보를 법의 규정으로 올릴 필요가 있음.

### 3)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 가. 위협에 비례한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입증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보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반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가 아니라 보안조치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는 단지 보안조치에 그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GDPR의 경우 제24조(컨트롤러의 책임)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GDPR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 및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하는 보안조치와 관련해서는 제3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도 제29조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여 보안조치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를 보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국내 안전조치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의 실제 위험성에 비례하는 조치를 요구하기 보다는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해왔음. 이는 수범자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용이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이 클 경우 그에 비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거나, 위험성이 거의 없을 경우에도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야기해왔음. 최근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경향은 위험성에 기반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앞서 언급한 GDPR 제24조는 기술 및 관리적 조치를 취할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가 자연인의 권리 및 자유에 미치는 위험의 다양한 가능성 및 정도와 함께 최신 기술, 실행 비용, 그리고 처리의 성격, 범위,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무엇보다 이러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일정한 가이드를 제시할 뿐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요건이 아님을 법상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나.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도입

최근 카카오맵에서 이용자들이 즐겨찾기한 장소들의 목록이 기본설정이 공개로 되어 있어 정보주체 본인도 모른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만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 기본설정 의무가 있었다면 법 위반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더러 애초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를 설계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설정을 했을 것임.

GDPR 제25조는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즉,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개인정보 처리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설계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특정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기본설정을 통해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는 것임.

갈수록 서비스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주기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설계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침해를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GDPR은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있고,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 대상과 평가 기준도 형식적이며, 영향평가의 결과가 공표되고 평가된 바가 없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이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사전 예방적인 수단으로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권고 사항에 불과함) 영향평가의 목적이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굳이 공공부문에 한정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대규모의 개인정보 처리, 즉 위험성이 높은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향평가 대상을 ‘민간의 위험성이 높은 개인정보 처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는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와 같이 형식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렇게 될 경우 실제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이 크지만 시행령 제35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향평가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정보주체 혹은 그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영향평가의 결과를 전부 혹은 일부라도 공개하여 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사회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의견 역시 가능한 공표할 필요가 있음.

## 라. 독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Data Protection Officer) 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처리자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 반면, GDPR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개인정보처리자를 자문하고 감독할 독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DPO) 제도를 두고 있는데, DPO는 조연자, 감독자의 위치이고 여전히 법을 준수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음. 따라서 처리자 내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DPO는 개념적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인정보 처리자 내에서 법에 근거가 있든 없든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률 준수를 조연하고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DPO 제도를 둘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 처리 위험성이 높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있는 자를 DPO로 선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4)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폭넓게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적절한 감독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수사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배제되거나 독립적인 감독의 예외가 되어서는 곤란함. 특히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청에 대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유럽연합의 타 국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정보수사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유럽연합 적정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음. 또한 이와 동반하여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삭제권과 처리정지권의 행사, 정보주체의 고지 받을 권리 또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수사기관 및 구금시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률적인 예외 규정들은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감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재 조항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제2항 <신 설> ①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2020. 2. 4. 개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으로 편입하는 등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 법률들의 상호 관계를 일부 정비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2020. 12.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9쪽).
- 이번 개정안 제6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면서도(제2항 본문) 유리한 것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을 새로이 명시하고(제2항 단서), 다른 법률의 제·개정시에 준수할 일반 원칙(제1항)도 명시함. 여러 법률간의 적용 우선 순위를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명확히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함.
- 그러나 논란의 여지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추후 신용정보법 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현재 조항	개정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3. (현행과 같음)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 6. (현행과 같음)

<p>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p> <p>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p> <p>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p> <p>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p>7. <u>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u>          ② ~ ③. (현행과 같음)</p>
---	---

- 개정에 반대함. ‘불가피하게’를 삭제할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현행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의 필요성이 없음.

### 3) 자율규제 활성화

현재 조항	개정안
<p>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li> <li>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li> <li>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li> <li>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li> <li>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제13조의2(자율규제단체의 지정) &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호위원회는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개인정보 자율규제 업무를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회 또는 단체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li> <li>②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li>③ 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율규약의 제정·개정</li> <li>2.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li> <li>3.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선 활동</li> <li>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목적에 필요한 업무</li> </ol> </li> <li>④ 보호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하는</li> </ol>

	<p>자율규제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기준·절차·심사·취소, 자율규약의 세부기준 등 자율규제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의3(자율규제단체 연합회의 설립) &lt;신 설&gt; ① 자율규제단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연합회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	---

-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만 후퇴시킬 우려가 더 높음. 현재는 법률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자율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하여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까지 하는 것은 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고, 개인정보 남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독려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하지 않고 이익단체인 연합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굳이 존치해야 한다면 자율규제 단체의 업무 범위를 모니터링 정도로 국한해야 할 것임.
- 개정안 제13조의 3은 자율규제단체 연합회 설립 및 지원의 근거 조항인데, 자율규제 단체 지정에서 더 나아가 그 연합회 설립까지 법에서 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위에서 본 악영향만을 더 조장할 것이 명백한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율규제단체로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특정 분야 기업 협의회가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자율규제단체는 해당 분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소속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요구를 하거나 위반이 심각할 경우 탈퇴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p>신설</p> <p>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여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이하 “개인영상정보”라 한다)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3항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촬영 사실을 표시할 경우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한 경우에는 사후에 촬영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지하여야 한다.          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기기’)에 관한 규정(제25조)만을 두고 있으므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 원칙(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등)이 적용됨. 개정안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 원칙을 대폭 완화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상업적 활용도를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던 개인영상정보보호법과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임.
-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유형의 개인정보에 비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지속될 수 있으며, 고정형에 비하여 이동형 영상기기로

수집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따라서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및 고정형 영상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보다 더 강화된 보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크게 낮추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한 촬영자가 촬영 사실을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표시한 경우 혹은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없는 개인영상 정보 수집이 위법하지 않게 됨(안 제25조의 2 제1항 제2호 각목, 제3항). 정보주체가 자신이 촬영당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적시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무단 촬영이 위법한 것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임. 이러한 무단 촬영 가능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음(안 제25조의 2 제1항 제3호).
- 또한 위 조항들은 “업무를 목적으로” 한 것을 전제하는 바, 이동형 영상기기로 무단 촬영한 것이 “업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ex.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단 촬영한 경우)에는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촬영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주체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방법을 스스로 강구할 수 밖에 없음.
- 한편, 개정안 제25조의 2 제2항은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중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이를 굳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음. 또한 가정집 내부와 같이 특정인이 이용하는 공간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큰 것은 자명함. 따라서 제25조의 2 제2항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25조 제2항의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의 내부”로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나아가, 고정형 영상기기에 적용되는 녹음 금지 조항(법 제25조 제5항) 역시 이동형 영상기기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안 제25조의 2 제3항 제1호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무단 촬영이 불가피하고, 촬영사실을 표시하면 수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무단 촬영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수사기관이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의 정도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감청에 준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굳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한 통제 방법도 통신비밀보호법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함.

- 개정안 제25조의 2 제3항 제2호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면 다른 사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여 무단 촬영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였는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를 이유로 무단 촬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 맞지 않음.
- 결론적으로 이 조항은 개인의 영상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제계의 요구만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보호”의 관점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항으로 폐기 혹은 대폭 수정되어야 함.

### 5)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

현재 조항	개정안
<p>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p> <p>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p> <p>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p>	<p>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p> <p>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u>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u> 처리할 수 있다.</p> <p>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u>제20조의2</u>, 제27조, 제34조제1항, <u>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u>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0조(비밀유지 등)</p> <p>1. (현행과 같음) 2. <u>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업무</u> 3, 4. (현행 제1호의2 및 제2호와 같음) 4의2. <u>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과 제35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u> 5. (현행 제3호와 같음)</p>

-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가명처리’의 허용(안 제2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의 ‘가명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가명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념정의 상으로도 구분되고, 처리의 대상, 처리의 방식, 처리목적, 처리결과, 해당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가명처리가 가명정보의 처리에 ‘포함’되는 관계라고 해석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12.)」 221쪽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해석으로 부당함.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줄이는 안전조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접근하는 개정안의 관점 자체가 부적절함.
- 더욱이 현행법상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목적이 너무 광범위하여, 공공적 가치보다는 기업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가 활용될 가능성을 매우 넓게 열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 없는 ‘가명처리’까지 허용할 경우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 현행 제28조의2 제1항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제한하고, 제28조의7은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삭제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총체적,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어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향후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의 인식가능성이나 통제가능성을 벗어나 유통과 거래의 대상이 됨. 즉 가명처리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총체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정보로 만드는 그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통제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 이처럼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에 가명처리를 추가하는 이 부분 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새롭고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이를 마치 기존의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비하는 수준인 것처럼 주장하며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현행법에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를 도입한 이후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가명정보처리 특례 규정에 의해 잠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항목을 가명처리하는지 등에 대한 열람권 행사, 향후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처리정지권 등은 기존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권리의 행사를 보다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범위 개정(안 제28조의7)에 대하여, 이 부분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해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들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파기의무'에 관한 제21조를 삭제하는 내용임. 가명정보도 여전히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처리목적구속의 원칙이나 최소처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이후에도 이를 계속 보존하도록 할 이유가 없음. 가명정보도 파기의무를 적용받도록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임. 현행법 제28조의7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 외 제28조의7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
- 입법예고와 함께 공개된 '규제영향분석서'(p58)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존기간은 피규제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가명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은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명처리를 한 ‘특정’ 목적(즉, 과학적 연구나 통계 작성이라는 일반적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특정’ 되어야 함)이 다하면 파기되어야 함. 이런 측면에서 가명정보 보관기간을 처리자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시간'을 고려요소 중 하나로 격하시키고 있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벗어난 잘못된 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사례를 따르면 안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개선하도록 시정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총체적으로 적용배제되는 가명정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현재 이 조항은 어떤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명정보처리 목적의 어떤 공익성도 담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광범위하게 희생시키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목적의 설정이 필요하고,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권리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GDPR 제89조 제2항은 개인정보가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목적이나 통계적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등 권리의 적용을 일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제한의 가능성을 부여하면서도, “그러한 권리가 그러한 특정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의 일부 제외가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이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에서 가명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28조의5를 함께 개정하는 방향, 또는 가명정보의 재식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범위와 방식을 고민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애초에 ‘추가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추가정보를 통한 재식별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임에도, 어떤 경우에도 재식별을 금지하고 특히 정보주체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에도 재식별 금지의무를 내세워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적임.

## 6)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 신설

#### 제28조의8(개인정보 국외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이하 “국외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국외이전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5.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국외이전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외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국외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5.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거부하는 방법과 절차, 거부하는 경우의 효과

④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정의 기준, 절차 및 지정취소, 제2항제5호에 따른 인정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9(국외이전의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을 위반한 경우

2. 국외이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국가가 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불복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요건을 다양화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 제28조의8 제6항에서 지정 및 인증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 여부의 중대한 기준이므로 최소한 기본적인 방향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 국외 이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 규정 등이 추가되어야 함(목적 제한, 데이터 최소화, 국외 이전 후 재이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및 정보처리자의 의무, 국외이전 정보의 누출 등 사고발생 시 국내기업의 책임 등).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

현재 조항	개정안
<p>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p> <p>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p> <p>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p> <p>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p>	<p>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lt; 신설&gt;</p> <p>① 보호위원회는 직권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p> <p>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p> <p>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p> <p>3. 자율규제단체 및 연합회</p> <p>② 보호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청구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보호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p>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구 및 심사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위반시 개인정보침해행위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정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일응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조기에 시정하고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로 제한하고 3년 이상의 활동실적까지 요구함으로써 지나치게 요건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정하고 있음. 직권으로 심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으나, 심사청구자를 이렇게 협소하게 정해서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보호’가 단체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옹호를 위해 활동을 해온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을 두는 것은 오히려 심사청구할 수 있는 단체들을 제한하겠다는 것임.
-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거나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약관규제법의 경우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약관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음.

####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조항

현재 조항	개정안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p>① ~ ④ 생략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u>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u>          ⑥ <u>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⑦ <u>보호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⑧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독립성 보장,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매출액 또는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질적인 독립성의 보장을 위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제31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규정한 이상,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관과는 그 위상이 다름. 어느 개인정보 처리자나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개인정보 처리자를 자문하고 감독할 독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DPO) 도입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는 자발적으로 구성할 문제이지 굳이 법에 둘 필요는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의 이익집단이 될 수 있는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호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제31조 제6항 및 7항의 신설에 반대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 무엇인지 법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임.

#### 9)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신설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①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2.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와 전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의 지원
  2.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③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과 취소의 기준, 절차, 관리, 감독,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제35조의2는 정보주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1) 자신, 2)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3) 제35조의3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내용임
- 정보전송요구권 도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균형달성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소위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내용은 GDPR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로 도입된 정보이동권과는 거리가 있음. 정보이동권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의 형식화된 동의제도, 정보주체 개인과 기업간의 정보력, 판단력과 협상력의 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정보전송요구권의 일반적인 도입은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선택에 따른 '전송요구'라는 한 차례의 포괄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를 거쳐 기업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정보전송요구권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행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정보주체가 전송되는 정보의 항목, 범위, 정보의 양, 전송받는 업체를 통해 통합되는 정보의 내용, 전송받은 업체의 정보 활용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정보전송 요구권행사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 기준, 부당한 전송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 또는 전송 중단,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중단이나 철회, 전송한 정보의 회수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임.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및 국외이전에 관한 절차적 통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정보전송권의 개념정의에 가까운 내용만을 마련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불충분함. 정보전송요구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과, 적절한 통제장치들을 함께 법률 단계에 규정해야 함.
- 정보전송요구권의 명시적인 도입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나 맞춤형 서비스 같은 약간의 편익을 제공하면서 그 제공하는 편익을 훨씬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전송대상업체가 수집하게 되는 불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일종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우선,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사업은 별개의 이슈임.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함께 서비스 사업자 간의 전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특정한 사업자에 종속(Lock-in)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임.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집중시키는 모델임. 따라서 개정안에서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규정하더라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도까지 두어야 하는지는 의문임. 전송 요구권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전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도를 두지 않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그렇다면, 특정 산업의 사업자를 인허가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인지 의문임. (또한 어차피 보호위원회만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보호위원회는 오히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혹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인정보의 집중과 통합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만일 서로 다른 분야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게 될 경우 특정 전문기관이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 개인 감시의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내 통신 내역, 금융 이용 내역, 진단 내역 등을 모두 알 수 있다면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특정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특정 업체에서의 유출보다 훨씬 커질 것임. 더불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만일 마이데이터 사업이 없었다면 그러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성까지 정보주체에게 충분히 고지될 것인지 의문임.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집적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선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동권, 특히 정보전송 요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행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정보전송 요구권행사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 부당한 전송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 또는 전송 정지·중단에 관한 규정 및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및 국외이전에 관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10)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 권리 도입

신설

제37조의2(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하여 특정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법적 효력 또는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행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 거부, 이의제기,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거부 요구는 제2호에 한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2.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배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화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가 사전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 제37조의2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허용된다고 전제하는 부분,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각호 사유를 분류하고, 그 분류를 기준으로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차등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자동화 의사결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허용되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됨(가령, 20대 국회에 발의 되었던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또한, GDPR에서도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하여 특정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법적 효력 또는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와 유사하지만, GDPR은 ‘명백한’ 동의임을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GDPR과 달리 개정안은 다른 적법 요건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하여 특정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법적 효력 또는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비록 정보주체가 사후에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의적으로 정당한 이익으로 판단하고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자동화 의사결정을 규율하면서 “프로파일링”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GDPR과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링을 명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 더불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거부, 이의제기, 설명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법률조항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함. 가령 정보주체의 고지권, 통지권, 접근권, ‘로직’에 대한 설명요구권 등이 추가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또한, 자동화 의사결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개정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 의사결정은 엄격히 규율되어야 하는 영역임. 그러나 법안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법안은 자동화 의사결정의 광범위한 허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 입장이 불분명 함. 만약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안 제37조의2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라면, 해당 조항은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될 필요 있음. 가령 GDPR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 혹은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에 대한 자동화 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있음.

11)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

현재 조항	개정안
<p>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p>	<p>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1. &lt;삭 제&gt;                      2. (현행과 같음)                      3. &lt;삭 제&gt; -&gt; 15조의1항7로                      4. (현행과 같음)</p>

<p>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p> <p>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p> <p>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 안 제58조 제1항은 적용제외 대상을 “제3장부터 제7장”에서 “제3장부터 제8장”으로 확대하고 있음. 제7장과 제8장은 피해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 구제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자 피해자로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안 제58조 제1항이 적용 일부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적어도 제7장과 제8장이 적용 일부 제외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함.
- 한편 안 제58조 제1항처럼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음. 안 제58조 제1항 각호의 정보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임. 설사 적용의 일부 제외가 필요하다더라도 장이 아닌 제외가 필요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안 제58조 제1항 각호 중 1)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제1호), 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제3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함. 특히 제3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근거로 부당히 활용되기도 하였음.

## 12)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현재 조항	개정안
<p>제40조(설치 및 구성)</p> <p>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40조(설치 및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경험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조정 신청 등)

-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경험한 사람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 제43조(조정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한 장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신 설>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p>제45조(자료의 요청 등)</p> <p>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	--

- 분쟁조정위원회 인원을 확대(안 제40조), 분쟁조정신청 시 응해야 하는 주체 확대(안 제43조), 자료요청 및 사실조사 등 권한을 확대(안 제45조), 분쟁조정 수락간주(안 제47조), 시효중단(안 제49조의2), 제도개선 의견 통지(안 제50조) 등 모든 조항은 분쟁조정제도의 실질화에 기여하는 조항으로 판단 됨. 분쟁조정제도의 실질화는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개정에 찬성함.

1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정비

현재 조항	개정안
<p>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p> <p>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p>	<p>제39조의3 앞에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를 삭제한다.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9, 제39조의10 및 제39조의11을 각각 제39조의16, 제34조의3 및 제31조의2로 한다.</p> <p>제39조의16(중전의 제39조의9)  ① <u>개인정보처리자</u>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lt;신 설&gt;  1. 공공기관  2.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p>

	<p>3.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개인정보처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u>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인정보 수집 이용 요건·완화 : 제39조의3 삭제 후 제15조에 수정반영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요건 일원화 : 제39조의4 삭제 후 제34조에 수정반영          개인정보취급자 범위 최소화 : 제39조의5 삭제 후 제28조에 수정반영          정보주체의 동의철회권 규정 : 제39조의7 삭제 후 제37조에 수정반영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 제39조의8 삭제 후 제20조의2 신설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확대 : 제39조의9 삭제 후 제39조의16 신설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제39조의10 삭제 후 제34조의3 신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 제39조의11 삭제 후 제31조의2 신설          개인정보 국외이전 : 제39조의12 삭제 후 제28조의8 신설</p>
--	---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일반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① 일반규정으로 전환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판단됨.
- ①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 완화) 제15조 제1항 제4호의 “불가피하게 필요”를 “필요”로 규정한 부분 ▲(정보주체의 동의철회권 규정) 처리정지권에 철회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인데, “철회”와 “처리정지권”은 구분되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②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은 ▲파기 유효기간제를 폐기했다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임.

14)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

현재 조항	개정안
-------	-----

<p>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li> <li>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li> <li>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li> </ol> <p>제60조(비밀유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li> <li>1의2.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li> <li>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li> <li>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li> </ol> <p>제64조(시정조치 등)</p> <p>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li> <li>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li> <li>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p>제66조(결과의 공표)</p> <p>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li> <li>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li> <li>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u>이용</u>,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li> </ol> <p>제60조(비밀유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제28조의3에 따른 <u>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업무</u>.</li> <li>3·4. (현행 제1호의2 및 제2호와 같음)</li> <li>4의2. <u>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과 제35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u></li> </ol> <p>제64조(시정조치 등)</p> <p>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66조(결과의 공표)</p> <p>① <u>보호위원회</u>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고, 공표대상자에 대하여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lt;삭 제&gt;</p> <p>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안 제59조와 관련하여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행위 외에 이용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개정으로 보임. 다만 위 조항이 공익언론제보 등을 위축시키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임.

- 안 제60조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기관의 가명정보결합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개정으로 찬성함. 가명정보는 결합시 식별의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는 더욱더 그 비밀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안 제64조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이라는 기존의 시정조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범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므로 개정에 찬성함.

15)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현재 조항	개정안
<p>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제64조의2(중전의 제39조의15,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u>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의 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lt;신 설&gt;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정도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            6. 피해의 회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여부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            ④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자기</p>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신 설>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4의2 ~6. (현행과 같음)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2. <삭 제>

2.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 제64조의2 제1항은 현재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부과되었던 4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강화한 측면은 있음. 이러한 부분들은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특히 GDPR과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임. 다만 안 제64조의2 제3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따라 과징금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를 사실상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우려됨.

- 벌칙조항(안 제71조, 제72조, 제73조)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구성요건으로 추가되었음. 이는 고의 외에 목적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임. GDPR은 각국에게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형사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위 목적요건이 추가되는 경우 형사처벌 조항들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구성요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함.
-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대상으로만 규정하였음. 타당한 개선인지 의문임(가령 파기의 경우는 강한 위반으로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안 제75조 제2항은 제1호를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 업무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제15조 제2항, 제18조 제3항 또는 제26조 제3항)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리고 이를 특별히 제재하는 조항이 법안에 부재한 것으로 보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직접 제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현행 조항과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안 제75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는 것에 반대함.